

한국어교육 정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 교육부를 중심으로

우창현(대구대)·민경모(계명대)·김명광(대구대)·백승주(전남대)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 1) 법률적 근거 : 국내 대상(TOPIK 포함)
- 2) 법률적 근거 : 국외 대상
- 3) 사업의 주요 범위와 대상

2.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 1) 프로젝트 추진 현황
- 2) 추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3. 교육부의 향후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추진 방향

4. 교육부 추진 주요 사업 관련 시사점 및 제언

5. 결론을 대신하여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1) 법률적 근거 : 국내 대상 (TOPIK 포함)

- **초·중등교육법**
 -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 【별책 27】**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7-131호**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 【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966호]**
 - 제13조 (학생지원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25.>
 1. 교육 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 **고등교육법**
 - 제34조의7 (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2) 법률적 근거 : 국외 대상

- 재외국민교육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 제8조 (교육과정)
 -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1) 법률적 근거 : 국외 대상

- 재외국민교육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 · 한국사 ·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 · 보급)

-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 · 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2) 법률적 근거 : 국외 대상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966호]
 -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인증
 - 33. 국제장학프로그램 (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 34.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35.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46호]
 - 제3조 (기획조정실장) ④ 국제협력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2. 25.>

1.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사업 개요

3) 사업의 주요 범위와 대상

• 정책의 주요 범위

- 국내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KSL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계승어 교육(한국학교/한국교육원 운영, 한글학교 지원)
-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국립국제교육원 운영)
- 해외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지원(교육과정 운영, 교과목 채택, 한국어 교재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및 시행
- 국제 교육 협력 및 교류

• 정책의 주요 대상

- 국내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
-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 정부 초청 장학생 포함 국내 유학생
- 해외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의 외국 학생

2.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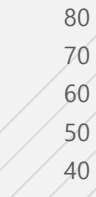
1) 프로젝트 추진 현황

추진 프로젝트의 분야별 현황

교육 지원을 위한

| | |
|-----------------|-----|
|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 37 |
| 교원 양성 및 연수 | 30 |
| 교육과정, 평가 | 72 |
| 교류, 협력 | 11 |
| 합계 | 150 |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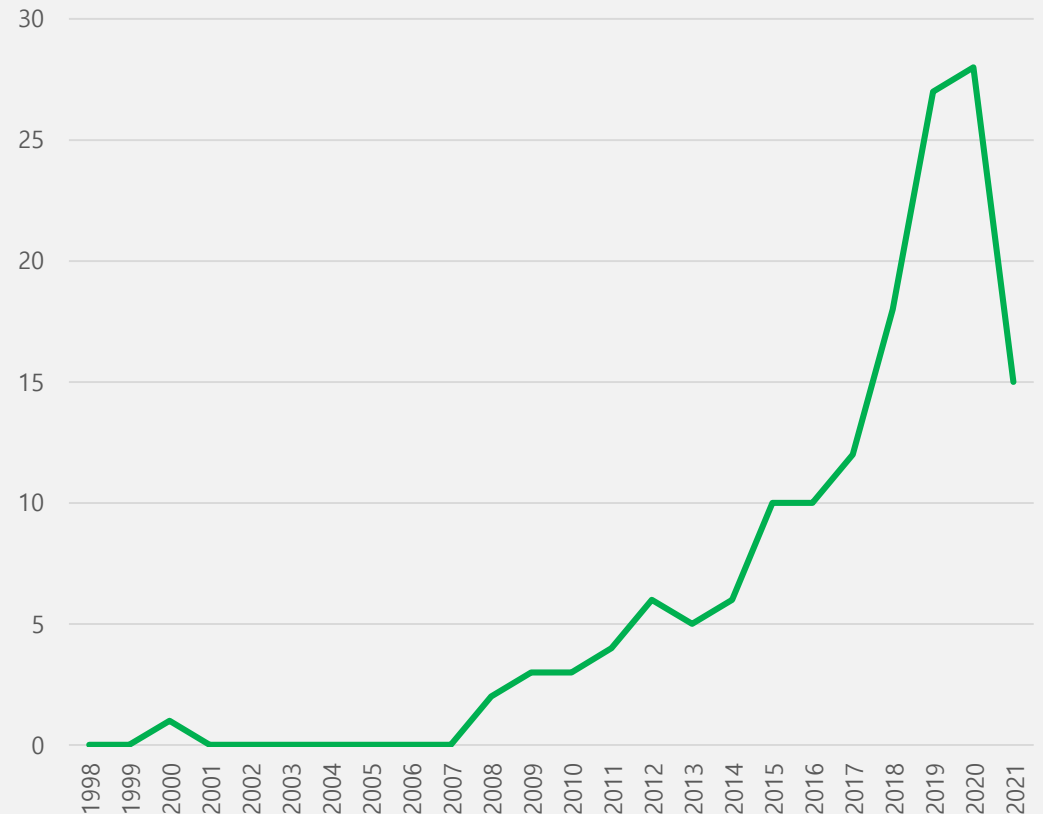


교류, 협력

교원 양성 및 연수

교육과정, 평가

추진 프로젝트의 연도별 현황



2.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2) 추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국내 대상(TOPIK 포함)

- 국내 초·중등학교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① 초·중등학교 KSL 교육과정 개발
 - ② KSL 교재 및 지도서 개발
 - ③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
 - ④ KSL 교사 연수 사업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련 연구 사업
 - ① 한국어능력시험 문항 개선 및 문제 은행 시스템 개발
 - ②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③ 한국어능력시험 확산 및 학습 콘텐츠 개발
 - ④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연구

2.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2) 추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국외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①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②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 ③ 재외한국어교육자 교육 지원
- 국외 정규 정규과정 한국어교육 지원
 - ①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② 국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③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
- 해외 유학생 국내 유치 및 지원

3. 교육부의 향후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추진 방향

- 국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 ① 국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확대
 - ② 국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중급 교재 및 맞춤형 교재 개발
 - ③ 현지 대학 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확대

-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 ① 한국어교육 거점으로서 한국교육원 확충 및 역할 강화 체계 구축
 -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 기회 확대
 - ③ 한국어능력시험 평가체계 개선 및 법적 기반 완비

[교육부,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4. 교육부 추진 주요 사업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KSL 교육과정을 정규 초·중등학교에 도입하여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제도권 교육에 편입
-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시험의 정착화에 기여
- 국외 현지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에 활용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확대에 기여
-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 교과목 채택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노력
-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어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 지원

4. 교육부 추진 주요 사업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KSL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 개발된 KSL 교육과정 및 교재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한 사업 필요

- KSL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 : 전문적 KSL 교원 확보 필요

- 한국어교육적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이 KSL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
 - 전문적 KSL 교원의 양성을 제도화할 필요

4. 교육부 추진 주요 사업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 및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별화와 다양화에 대한 요구 고려 필요

- 한국어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 환경, 학습 목적 등이 다양함을 고려
- 직무 중심, 목적 중심의 한국어 능력 평가 필요

- 재외국민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 연구 및 추진 필요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
- 재외동포는 재외한국학교가 아닌 현재 학교로 진학하는 추세
- 국외 교육기관에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등록하는 경향 증가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 또한 정체성 교육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문화 이해 교육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4. 교육부 추진 주요 사업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해외 유학생 국내 유치 및 지원

: 한국 유학의 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에 대한 정책 연구 필요

- 상당수의 유학생이 학업 및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
- 대학에 맡겨진 유학생 관리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

• 국외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지원

: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물을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 기초 연구 필요

- 국외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등에 대해서는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황

: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국어 학습이 현실적 동기와 연결될 수 있는 관리 정책 필요

5. 결론을 대신하여

-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중복 지원 문제

-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경우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중첩적 한국어교육 대상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가족인 Ali는 중학교 1학년 때 전입하여 학교에서 KSL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토요일은 다문화 교육 지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운다.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가 집으로 찾아와 한국어를 지원받는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다가 대학에 가서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반을 수강한다. 한국어 교육 내용에 차별성도 없고 각각의 한국어 교재 내용도 표준한국어교재로 동일하다. 대학에 가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했지만 대학 수업을 수강하기가 어려워 지금 한국 대학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중이다.

-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대한 문제

- 정책 개발 및 추진과는 별도로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어교육’을 교육 지원의 문제로 볼 것인가, 교육 정책의 문제로 볼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지원의 문제로 본다면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덜하나, 교육 정책의 문제로 본다면 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
-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교육과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정책 추진의 주도권이 한국에 있기에 부처 간 협력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논의 필요
 - 해외 정규 초·중등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 추진의 주도권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기에 어느 부처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교육부의 국외 정규 초·중등학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은 해당 국가의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정책 추진의 실행적 측면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